송도자이르네 디오션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Home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송도자이르네 디오션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송도자이르네 디오션 홈페이지(http://sd-xirn.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 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코로나 19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포함)
 -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 소독 발판,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 의심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송도자이르네 디오션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 정입니다.
- 송도자이르네 디오션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533-2569)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콜센터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u>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2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서구)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 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 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산광역시 서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 첨자에 해당 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 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 | 특별공급 | | | 일반공급 | |
|-------|---------------|---------------|---------------|----------------|----------------|----------------|---------|
| 신청사석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 (6개월 이상, 예치금) | (6개월 이상, 예치금) | (6개월 이상, 예치금) | (1순위, 24개월 이상, | (1순위, 24개월 이상, | (1순위, 24개월 이상, | (1순위에 |
| 처아트자 | ※ 단, 철거민 및 | ※ 지역별/면적별 | ※ 지역별/면적별 | 예치금) | 예치금) | 예치금) | 해당하지 않는 |
| 청약통장 |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 예치금 이상인 자 | 예치금 이상인 자 |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 경우) |
| | 장애인, 국가유공자 | | | 이상인 자 | 이상인 자 | 이상인 자 | |
| | 불필요 | | | | | | |
| 세대주요건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소득 또는 | | | 적용 | | 적용 | | |
| 자산기준 | - | - | | - | <u> </u>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 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0 | 0 | 0 | 0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0 | 0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 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d-xirn.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 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 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이중당첨 및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 자격 적 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거주자인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앙) | | 1순위기타지역 (울산광역시,경상 남도 거주자) | | 당첨자발표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 계약체결 |
|----|---|------------------------|---------------------------------|-----------------------|------------------------------|--|---------------------|
| 일정 | 9월 5일(월) | 9월 6일(화) | 9월 7일(수) | 9월 8일(목) | 9월 19일(월) | 9월 20일(화)~9월 26일(월) | 9월 30일(금)~10월 2일(일) |
| 방법 | 인터넷 청약(09:00 ~ 17:30) | 인터넷 청약(0 | 9:00 ~ 17:30) | 인터넷 청약(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10:00 ~ 16:00) | 견본주택(10:00 ~ 16:00) |
| 장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 한국부동산원 - PC: www. | 청약Home applyhome.co.ki | • | | ■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 - 제출서류는 당사 홈페이지(http | |
| |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스마트폰앱 | | | |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한 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및 운영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45세대(다자녀 특별공급 3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2세대) 중 다자녀 특별공급 33세대(건설량의 15% 범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12세대(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선별(당첨자 발표일[2022.09.19]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고, 공급금액(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하여 공급합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중 당첨세대(정당계약일)에 한하여 공급하며, 이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선착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 혜택은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 받지 못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L 분 | 84A | 84B | 84C | 105 | 113 | 합계 |
|-----------------|----------------|-----|-----|-----|-----|-----|----|
| | 다자녀가구 | 14 | 5 | 2 | 8 | 4 | 33 |
| 아이맘부산플랜 적용세대 | 신혼부부 | 9 | 2 | 1 | - | - | 12 |
| 70/11/11 | 합계 | 23 | 7 | 3 | 8 | 4 | 45 |

-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아이,맘부산플랜」대상 세대에서 제외되며,「아이,맘부산플랜」적용 세대는 45세대입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세대는 각 타입별로 위와 같이 배정되며, 각 타입별 배정된 세대수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위 표와 같이 각 타입별「아이.맘부산플랜」세대 배정이 되며, 각 타입별 경쟁이 발생 시에는 당첨자 발표일(2022.09.19.)에 해당 경쟁 유형 추첨 대상자를 대상으로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별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에 따라 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15%로 하향 적용되어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우선공급 세대를 우선 공급하고, 미달되는 타입에 한해 일반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에 배정되며, 경쟁 발생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특별공급의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분양가 인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에 선별되는 세대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주체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별하며, 선별되는 세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되는 동.호수 추첨과 무관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지거나 3천 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
 - 2020. 2. 21.부터 개정·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 36911 (2022.08.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15-1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29층 4개동 총 2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88세대(일반[기관추천] 14세대, 다자녀가구 33세대, 신혼부부 21세대, 생애최초 14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5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m², 세대)

| | | | | | | | | | | | | , 11 117 | | | | | | | | |
|----|------------|----|----------------|--------|----------|----------|----------|----------|---------|----------|---------|----------|------------------|-----------|----------|----------|------------|----|-----------|------------|
| 주택 | | | 주택형 | 타입 | 2 | F택공급면? | | 71.7.0 | マ +1 エレ | 조 | 세대별 총공급 | 총공급 | | | | | | | 일반 | 최하층 |
|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거전용 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공급 면적 | 기타공용 주차정 | 주차장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세대수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부양자 | 소계 | 공급 세대수 | 우선 배정세대 |
| | | 01 | 84.9776A | 84A | 84.9776 | 21.1710 | 106.1486 | 5.6731 | 38.9619 | 150.7836 | 41.4192 | 95 | <u> 구연</u> 10 | 14 | 14 | 10 | 3 | 51 | 44 | 5 |
| | | 02 | 84.9543B | 84B | 84.9543 | 21.5774 | 106.5317 | 5.6716 | 38.9512 | 151.1545 | 41.4078 | 28 | 3 | 5 | 5 | 3 | 1 | 17 | 11 | - |
| | | 03 | 84.8703C | 84C | 84.8703 | 21.3631 | 106.2334 | 5.6661 | 38.9127 | 150.8122 | 41.3669 | 11 | 1 | 2 | 2 | 1 | - | 6 | 5 | 1 |
| | | 04 | 84.9713T | 84T | 84.9713 | 21.0791 | 106.0504 | 5.6728 | 38.9590 | 150.6822 | 41.4161 | 8 | - | - | - | - | - | - | 8 | 3 |
| 민영 | 2022000598 | 05 | 105.9963 | 105 | 105.9963 | 28.1458 | 134.1421 | 7.0765 | 48.5989 | 189.8175 | 51.6639 | 53 | - | 8 | - | - | 1 | 9 | 44 | 2 |
| 주택 | | 06 | 113.9167 | 113 | 113.9167 | 26.8035 | 140.7202 | 7.6053 | 52.2304 | 200.5559 | 55.5245 | 28 | - | 4 | - | - | 1 | 5 | 23 | - |
| | | 07 | 134.9472 | 134 | 134.9472 | 34.3255 | 169.2727 | 9.0093 | 61.8728 | 240.1548 | 65.7750 | 1 | - | - | - | - | - | - | 1 | - |
| | | 08 | 143.9810 | 143 | 143.9810 | 37.4221 | 181.4031 | 9.6125 | 66.0148 | 257.0304 | 70.1782 | 2 | - | - | - | - | - | - | 2 | - |
| | | 09 | 161.8405 | 161 | 161.8405 | 43.8458 | 205.6863 | 10.8487 | 74.2131 | 290.7481 | 78.8832 | 1 | - | - | - | - | - | - | 1 | - |
| | 합 계 | | | | | | | | | | | 227 | 14 | 33 | 21 | 14 | 6 | 88 | 139 | 11 |



■ 공급금액 및 납부일 (단위: 세대, 원)

| 0 8 6 | | _ | | | | | | 계약금(10%) 중도금 1차 | | | X = 7 ^+' | X = 7 ^+/ | X - 7 ++1 | X = 7 ++1 | | [기·세네, 권) |
|-------|-------|--------|-----|-------------|-------------|------------|-------------|-----------------|------------|------------|------------|------------|------------|------------|------------|-------------|
| FIC | 71.01 | += | | | 공급 | 남금액 | | | | | 중도금 2차 | 중도금 3차 | 중도금 4차 | 중도금 5차 | 중도금 6차 | 잔금 |
| 타입 | 라인 | 층구분 | 세대수 | | =12: | | 1161-1 | 1차 | 2차 | 10% | 10% | 10% | 10% | 10% | 10% | 30% |
| | | | | 토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분양가 | 계약시 | 2022-10-28 | 2023-01-31 | 2023-06-30 | 2023-11-30 | 2024-05-31 | 2024-09-30 | 2024-12-31 | 입주지정일 |
| | | 2층 | 2 | | | - | 487,000,000 | 10,000,000 | 38,700,000 | 48,700,000 | 48,700,000 | 48,700,000 | 48,700,000 | 48,700,000 | 48,700,000 | 146,100,000 |
| | | 3~5층 | 6 | 209,798,080 | 286,201,920 | - | 496,000,000 | 10,000,000 | 3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148,800,000 |
| | 101동 | 6~10층 | 10 | 214,027,880 | 291,972,120 | - | 506,000,000 | 10,000,000 | 4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151,800,000 |
| | | 11~15층 | 10 | 216,142,780 | 294,857,220 | - | 511,000,000 | 10,000,000 | 4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153,300,000 |
| | | 16~20층 | 10 | 217,834,700 | 297,165,300 | - | 515,000,000 | 10,000,000 | 4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154,500,000 |
| 84A | | 21~28층 | 16 | 222,064,500 | 302,935,500 | - | 525,000,000 | 10,000,000 | 4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157,500,000 |
| | | 1층 | 3 | 214,027,880 | 291,972,120 | - | 506,000,000 | 10,000,000 | 4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151,800,000 |
| | | 2층 | 3 | 218,257,680 | 297,742,320 | - | 516,000,000 | 10,000,000 | 4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154,800,000 |
| | 103동 | 3~5층 | 9 | 222,910,460 | 304,089,540 | | 527,000,000 | 10,000,000 | 4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158,100,000 |
| | | 6~10층 | 15 | 227,140,260 | 309,859,740 | - | 537,000,000 | 10,000,000 | 4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161,100,000 |
| | | 11~15층 | 11 | 229,255,160 | 312,744,840 | - | 542,000,000 | 10,000,000 | 4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162,600,000 |
| | | 1층 | 1 | 219,103,640 | 298,896,360 | - | 518,000,000 | 10,000,000 | 4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51,800,000 | 155,400,000 |
| | | 2층 | 1 | 212,758,940 | 290,241,060 | - | 503,000,000 | 10,000,000 | 40,300,000 | 50,300,000 | 50,300,000 | 50,300,000 | 50,300,000 | 50,300,000 | 50,300,000 | 150,900,000 |
| | | 3~5층 | 3 | 216,988,740 | 296,011,260 | - | 513,000,000 | 10,000,000 | 4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153,900,000 |
| 84B | 101동 | 6~10층 | 5 | 221,218,540 | 301,781,460 | - | 523,000,000 | 10,000,000 | 42,300,000 | 52,300,000 | 52,300,000 | 52,300,000 | 52,300,000 | 52,300,000 | 52,300,000 | 156,900,000 |
| | | 11~15층 | 5 | 223,333,440 | 304,666,560 | - | 528,000,000 | 10,000,000 | 4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158,400,000 |
| | | 16~20층 | 5 | 225,025,360 | 306,974,640 | i | 532,000,000 | 10,000,000 | 4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53,200,000 | 159,600,000 |
| | | 21~28층 | 8 | 229,255,160 | 312,744,840 | - | 542,000,000 | 10,000,000 | 4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162,600,000 |
| | | 1층 | 1 | 210,221,060 | 286,778,940 | - | 497,000,000 | 10,000,000 | 39,70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49,700,000 | 149,100,000 |
| | | 2층 | 1 | 214,027,880 | 291,972,120 | - | 506,000,000 | 10,000,000 | 4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151,800,000 |
| 84C | 103동 | 3~5층 | 3 | 218,257,680 | 297,742,320 | ı | 516,000,000 | 10,000,000 | 4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51,600,000 | 154,800,000 |
| | | 6~10층 | 5 | 222,487,480 | 303,512,520 | - | 526,000,000 | 10,000,000 | 4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52,600,000 | 157,800,000 |
| | | 11층 | 1 | 224,602,380 | 306,397,620 | - | 531,000,000 | 10,000,000 | 4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159,300,000 |
| | | 1층 | 2 | 236,022,840 | 321,977,160 | - | 558,000,000 | 10,000,000 | 4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167,400,000 |
| 84T | 104동 | 2층 | 3 | 240,675,620 | 328,324,380 | - | 569,000,000 | 10,000,000 | 4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170,700,000 |
| | | 3층 | 3 | 245,328,400 | 334,671,600 | - | 580,000,000 | 10,000,000 | 48,000,000 | 58,000,000 | 58,000,000 | 58,000,000 | 58,000,000 | 58,000,000 | 58,000,000 | 174,000,000 |
| | | 1층 | 1 | 281,281,700 | 348,832,400 | 34,885,900 | 665,000,000 | 10,000,000 | 5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199,500,000 |
| 105 | 102 ⊊ | 2층 | 2 | 286,780,440 | 355,651,680 | 35,567,880 | 678,000,000 | 10,000,000 | 5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203,400,000 |
| 105 | 102동 | 3~5층 | 6 | 292,702,160 | 362,995,520 | 36,302,320 | 692,000,000 | 10,000,000 | 5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207,600,000 |
| | | 6~10층 | 10 | 298,200,900 | 369,814,800 | 36,984,300 | 705,000,000 | 10,000,000 | 6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211,500,000 |



| | | 11~15층 | 10 | 301,161,760 | 373,486,720 | 37,351,520 | 712,000,000 | 10,000,000 | 6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213,600,000 |
|-----|------|--------|----|-------------|---------------|-------------|---------------|------------|-------------|-------------|-------------|-------------|-------------|-------------|-------------|-------------|
| | | 16~20층 | 10 | 303,699,640 | 376,634,080 | 37,666,280 | 718,000,000 | 10,000,000 | 61,800,000 | 71,800,000 | 71,800,000 | 71,800,000 | 71,800,000 | 71,800,000 | 71,800,000 | 215,400,000 |
| | | 21~27층 | 14 | 309,621,360 | 383,977,920 | 38,400,720 | 732,000,000 | 10,000,000 | 63,200,000 | 73,200,000 | 73,200,000 | 73,200,000 | 73,200,000 | 73,200,000 | 73,200,000 | 219,600,000 |
| | | 1층 | 1 | 310,044,340 | 384,502,480 | 38,453,180 | 733,000,000 | 10,000,000 | 6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219,900,000 |
| | | 2층 | 1 | 301,161,760 | 373,486,720 | 37,351,520 | 712,000,000 | 10,000,000 | 6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213,600,000 |
| | | 3~5층 | 3 | 307,083,480 | 380,830,560 | 38,085,960 | 726,000,000 | 10,000,000 | 6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72,600,000 | 217,800,000 |
| 113 | 101동 | 6~10층 | 5 | 313,005,200 | 388,174,400 | 38,820,400 | 740,000,000 | 10,000,000 | 6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222,000,000 |
| | | 11~15층 | 5 | 315,966,060 | 391,846,320 | 39,187,620 | 747,000,000 | 10,000,000 | 6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224,100,000 |
| | | 16~20층 | 5 | 318,926,920 | 395,518,240 | 39,554,840 | 754,000,000 | 10,000,000 | 65,400,000 | 75,400,000 | 75,400,000 | 75,400,000 | 75,400,000 | 75,400,000 | 75,400,000 | 226,200,000 |
| | | 21~28층 | 8 | 324,848,640 | 402,862,080 | 40,289,280 | 768,000,000 | 10,000,000 | 6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230,400,000 |
| 134 | 103동 | 12층 | 1 | 607,822,260 | 753,792,720 | 75,385,020 | 1,437,000,000 | 10,000,000 | 133,700,000 | 143,700,000 | 143,700,000 | 143,700,000 | 143,700,000 | 143,700,000 | 143,700,000 | 431,100,000 |
| 143 | 101동 | 29층 | 1 | 631,509,140 | 783,168,080 | 78,322,780 | 1,493,000,000 | 10,000,000 | 139,300,000 | 149,300,000 | 149,300,000 | 149,300,000 | 149,300,000 | 149,300,000 | 149,300,000 | 447,900,000 |
| 143 | 103동 | 16층 | 1 | 634,047,020 | 786,315,440 | 78,637,540 | 1,499,000,000 | 10,000,000 | 139,900,000 | 149,900,000 | 149,900,000 | 149,900,000 | 149,900,000 | 149,900,000 | 149,900,000 | 449,700,000 |
| 161 | 102동 | 28층 | 1 | 822,019,332 | 1,019,429,904 | 101,950,764 | 1,943,400,000 | 10,000,000 | 184,340,000 | 194,340,000 | 194,340,000 | 194,340,000 | 194,340,000 | 194,340,000 | 194,340,000 | 583,020,000 |

-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 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2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84.9776A | 84.9543B | 84.8703C | 84.9713T | 105.9963 | 113.9167 | 134.9472 | 143.9810 | 161.8405 |
|--------------|----------|----------|----------|----------|----------|----------|----------|----------|----------|
| 약식표기 | 84A | 84B | 84C | 84T | 105 | 113 | 134 | 143 | 161 |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납부 안내

| 78 | 계약금 | 10%) | | | 중도금 | | | | 잔금 |
|---------------------|-----|------|-------------------|-----------------|--------------|------------------|---------|---------|-------|
| 구분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30% |
| 84A/B/C/T, 105, 113 | 자납 | 자납 | 중도금 | 대출(50%) : 대출조건 | 이 각 수분양자에 따리 | · 사 상이할 수 있음. | | 자납 | 입주지정일 |
| 134, 143 | 자납 | 자납 | 중도금 대출(40% | 5) : 대출조건이 각 수! | 분양자에 따라 상이할 | 수 있음. | 자납 | 자납 | 입주지정일 |
| 161 | 자납 | 자납 | 중도금 대출(30%) : 대출조 | 도건이 각 수분양자에 [|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자납 | 자납 | 자납 | 입주지정일 |

- ※ 상기 중도금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 등이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취급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 정(신혼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 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향후, 금융정책 규제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화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대출취급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분양가격 9억초과 주택으로 HUG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이 불가한 134, 143, 161타입은 중도금 대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불가 시, 계약자는 송도자이르네 타 타입 중도금 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통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바람.
- ㆍ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ㆍ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ㆍ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방식(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으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ㆍ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포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ㆍ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ㆍ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공급면적 및 대 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 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 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 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 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ㆍ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인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합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 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 현황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 습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 견본주택은 84A, 113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외 미건립 타입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 하지 아니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 구년 | 븐 | | 84A | 84B | 84C | 105 | 113 | 합계 | | | | | | |
|---------------|------------|--------|----------|-----|----------|-----|----------|----|---|---|---|---|---|---|
| | 국가유 | 공자 등 | 2 | 1 | 1 | - | - | 4 | | | | | | |
| | 장기복무제대군인 | | 장기복무제대군인 | | 장기복무제대군인 | | 장기복무제대군인 | | 1 | - | - | - | - | 1 |
| | 10년 이상 7 | 장기복무군인 | 1 | - | - | - | - | 1 | | | |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중소기업근로자 | | 2 | 1 | - | - | - | 3 | | | | | | |
| | | 부산광역시 | 2 | 1 | - | - | - | 3 | | | | | | |
| | 장애인 | 울산광역시 | 1 | - | - | - | - | 1 | | | | | | |
| | | 경상남도 | 1 | - | - | - | - | 1 | | | | | | |
|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5 | 2 | 8 | 4 | 33 | | | | | | |
| 신혼부부 ! | 14 | 5 | 2 | - | - | 21 |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 | 1 | - | 1 | 1 | 6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0 | 3 | 1 | - | - | 14 |
| 합계 | 51 | 17 | 6 | 9 | 5 | 88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 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10:00 ~ 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 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해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민증목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청약자격

요건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서는 예비대상

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33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 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3항)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 평정요소 총배점 | | 배점기준 | | 비고 | | |
|--|---------|----------------|----|--|--|--|
| 000 | 0 11 11 | 기준 | 점수 | 니프 | | |
| 계 | 100 | | | | | |
| 미서は 내스스 |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 | |
| 미성년 자녀수 (1) | 40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
| 영유아 자녀수 |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 | |
| | 15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ㆍ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2)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
|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 재 | | |
| (3) | | 한부모 가족 | 5 |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 주택기간을 산정 | | |
| 무주택기간 20 (4)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ㆍ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 택기간 산정 | | |
| 해당 시·도 | 45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 거주기간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사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본다. | | |



| (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 입주자저축가 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6) | | |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21세대

- ■대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 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 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분양권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전매 요청을 접수합니다.)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가 동일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 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구분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
| 소득기준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 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 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 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 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 공급유형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2년 적용) | | | | | |
|------|------------------|-----------------------|------------------------------|-------------------------------------|--------------|--------------|--------------|--------------|--------------|
| | c | онто | 下世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우선공급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 | (기준소득, 5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0/ 초교 1200/ 이성 | 6,208,935원~ | 7,200,810원~ | 7,326,073원~ | 7,779,826원~ | 8,233,579원~ | 8,687,332원~ |
| 1 | 꼬ㅋ | 전론구구 포구 포국이 있는 경구 | 100% 초과~120% 이하 | 7,450,721원 | 8,640,971원 | 8,791,286원 | 9,335,790원 | 9,880,294원 | 10,424,797원 |
| 1 | 기준 일반공급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140% 이하 | 6,208,935원~ | 7,200,810원~ | 7,326,073원~ | 7,779,826원~ | 8,233,579원~ | 8,687,332원~ |
| 구분 | | | | 8,692,508원 | 10,081,133원 | 10,256,501원 | 10,891,755원 | 11,527,009원 | 12,162,263원 |
| | (상위소득, 2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160% 이하 | 7,450,722원~ | 8,640,972원~ | 8,791,287원~ | 9,335,791원~ | 9,880,295원~ | 10,424,798원~ |
| | | |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소득기준 | · - / 자산기준 충족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4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 (2 | 부첨제, 3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신청자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 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건축물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구택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부동산 | 부동산 3억3,100만원 | | | | | | | | |
| (건물+토지) 이하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은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기 | | |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 ■대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미적용)

■청약자격요건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 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청약자격요건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 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구분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
| 소득기준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 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 공급유형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2년 적용) | | | | | |
|----------|-----------------------|------------------------------|-------------------------------------|----------------------------|----------------------------|-----------------------------|-----------------------------|-----------------------------|
| | ομπο | I T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 기준 구분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071,615원 ~9,934,294원 | 9,361,053원 ~11,521,294원 | 9,523,895원 ~11,721,715원 | 10,113,774원 ~12,447,720원 | 10,703,652원 ~13,173,725원 | 11,293,531원 ~13,899,730원 |
| ᄎᅒᄁᆝ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1 | 추첨제 (30%) 1인 가구 | 160% 이하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3070) |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건축물가액은 혀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 | |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건축물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十书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단, 아래 경우는 - 「농지법」제2조 - 「초지법」제22 - 공부상 도로, - 종중소유 토지(계를 입증하 |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E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음 |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 | | |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신청자격 |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 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재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③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며,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 관련 신청자격 |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 85m²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75%) 및 추첨제 (2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 전용 85m² 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적용, 추첨제(7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2순위 | 전 주택형 |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2]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m²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m²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m²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 1

| 구분 | 내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 |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 또는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① 무주택기간 | 3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2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
| 부양가족수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i)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 | 3명 | 20 | | |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3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입주자저축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가입기간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 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 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 기목 2)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 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ㆍ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IV 특별공급 입주자,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방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계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

| |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건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점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 자에 한해 별도의 신정철자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건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전용면적 85㎡ 소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신청자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의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 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1술위에서 미술 제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반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추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점으로 선정 * 기업제가 학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점이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최조로 예비인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다 주변에 당취되고 원리되면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반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지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

-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 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Į. | 닌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 2022.09.05.(월요일)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574 |
| | 1순위 | 해당지역 (부산광역시 거주자) | 2022.09.06.(화요일) 09: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안국무통산원 '정악Home' 옴페이지 (www.applyhome.co.kr) |
| 일반공급 | 正刊 | 기타지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2022.09.07.(수요일) 09:00~17:30 | |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 2순위 | | 2022.09.08.(목요일) 09:00~17:30 | |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 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 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시, 신청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시」. 단, 미동의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구분 | 구비사항 | | | | | | |
|----|--------------------------------|---|---|--|--|--|--|
|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
| 일반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 공급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청약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 | |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위 임 시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 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 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 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 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I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 |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 일시 : 2022.09.19.(월요일) • 확인방법 | • 일시 | | | | | |
| | 1순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2022.09.30.(금요일) ~ 10.02.(일요일)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 | | | | |
| 일반공급 | 2순위 | | - 선근구역 (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574번지) | | |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시 및 방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 이용기간 | | 2022.09.19.(월요일) ~ 2022.09.28.(일요일) (10일간) | |
| S |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청약 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 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 휴대폰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문자서비스 | 제공일시 | 2022.09.19.(월요일)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Ⅷ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 대상 |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 제출장소 | | |
|-------------------|---|-------------------------|--|--|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 9월 20일(화요일) ~ 9월 26일(월요일) 10:00 ~ 16:00 | | |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 9월 20일(화요일) ~ 9월 26일(월요일) 10:00 ~ 16:00 |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574번지 | | |

-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http://sd-xim.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당첨 자(예비입주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방식 및 일정, 운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안내
-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ㆍ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자격검증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 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 <표 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반공급 자격별 구비서류

| | 서류 | 유형 | | | |
|------------------|----|-----------------|-------------------------------------|----------|---|
| 구분 | 필수 | 추가 (해당 자)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0 |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 접수 시 생략) |
| | 0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0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Home에서 청약경우 생략) | 본인 |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 입)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공 <u>통</u> 서류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0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 | 0 |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 |

| | | | | | 급 |
|----------------------|---|---|-------------------|-----------------|--|
| - | 0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한 "상세"로 발급 |
| | 0 | |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 | | 0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0 | | 직계비속 |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0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복무확인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해외근무자 | 0 | | 해외체류 증빙서 |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 (단신부임) | | 0 | 체류국가 확인이 가능한 여권사본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여권 발급 경력이 전혀 없는 세대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0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사정 불인정 • 배우자 및 세대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0 |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0 | | 다자녀 배점 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다자녀 특별공급 - | | 0 | |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 7208 | | 0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0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 0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자녀 | • 만 19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0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 | 0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 | 0 | | 소득증빙서류 (아래 <표 2> 참고)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 | 0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및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0 |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 본인 및 세대원 |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해당 건물 및 부속토지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
| | | 0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0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 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 | | 0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 19세 |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 이상 세대원 | |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 | 0 | | 소득증빙서류 (아래 <표 2>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 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 | 0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 3> 참고) |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의 통산 5개년도 이상 소득납부 인정 서류 필요 |
| 생애최초 | | 0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및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 특별공급 | | 0 |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 본인 및 세대원 |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해당 건물 및 부속토지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 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0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직계비속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0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0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이 점수 산정)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노부모 부양자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특별공급 | | 0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0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0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 |



| | | | | | 기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0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부적격 통보를 | | 0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받은 자 | | 0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무효확인서 등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 | | | |
| | 0 | | 인감증명서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제3자 대리인 | 0 | | 인감도장 | 본인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
| 신청시 추가사항 | 0 |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 | 0 |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0 | | 인장 | 대리인 | • 서명 또는 도장 |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모집공 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신청 당일 견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표 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일반근로자 |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경우 인정 불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해당 직장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 근 로 | 금년도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경우 인정 불가 - 금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 해당 직장 |
| 자 | 전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경우 인정 불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해당 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 해당 직장 |
| 자 영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 | • 세무서 |
|--------|----------------------------|---|-------------------------------------|
| 업 자 | 신규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 세무서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해당 직장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 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각서(별도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 입증서류제출 | • 접수장소 |
| 기타 |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

-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 여부 | 서류 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 | 근로자 |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경우 인정 불가 | |
| | 자격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증서류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 해당 직장 / 세무서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해당 직장 해당 직장 / 세무서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 요망.



VIII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상기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맞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제출기간 | 제출대상 | 제출장소 | 유의사항 |
|-------------------------------------|-------------------|------------------------------|----------------------|
| 2022.09.20.(화요일) ~ 2022.09.26.(월요일)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 견본주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 (7일간, 10:00 ~ 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574번지) |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계약체결 | 유의사항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2.09.30(금요일) ~ 2022.10.02.(일요일) (3일간) 10:00~16:00 | 견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574번지) |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순위 내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 필수 | 유형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0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 | 0 | | 자격검증 서류 일체 | 본인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공통서류 공통서류 | 0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당첨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 (일반공급,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신분증 본인 |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7208) | 0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
| | 0 | | 전자수입인지 | 본인 | • 사본 제출 (원본은 수분양자가 보관하는 공급계약서와 같이 보관) | |
| 제3자 | 0 | | 인감증명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대리인 | | | 본인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 |
| 신청 시 추가사항 | 0 |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 0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0 | 인장 | 대리인 | • 서명 또는 도장 |

-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통과자들은 위 내용의 서류만 구비, 단,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미이행한 자는 자격확인제출서류 포함하여 내방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8.2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 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 할 계획입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 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 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주택 당첨자로 선정 된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 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 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ㆍ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 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역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ㆍ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이에 대한 미납부 및 기타행정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 상합니다.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단지 내 도로 설치로 인한 자동차 전조등 등을 포함함),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계약금) | 국민은행 | 581201-01-416261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 분양대금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 수 진근 8 |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 현식구시구중단단극(구) |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계약금을 비롯한 중도금, 잔금은 모계좌[국민은행581201-01-416261,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 부적격으로 판명 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이 가능.(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 행에서 본인이 납부 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이 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ㆍ 금융관련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ㆍ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 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 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 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 전액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 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해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 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ㆍ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 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 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부산광역시 서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ㆍ 입주자의 입주 개시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사전방문 확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예정일 : 2025년 03월 예정
- ·실제 입주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능 한 날을 통보 예정입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니다.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 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 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맘스스테이션, 주민회의실, 피트니스센터 등 (단,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시설물임)
- 주차장 출입 가능한 높이 제한 : 지하 2층 진입 및 주행로 유효높이는 2.7m, 지하 3~4층의 주행로 높이는 2.3m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IX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확장 공사비

| 구분 | 바그나하자그애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T世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시 | 2023.01.31 | 입주지정기간 | 미끄 |
| 84A | 26,000,000 | 2,600,000 | 2,600,000 | 20,800,000 | - |
| 84B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 84C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 105 | 28,000,000 | 2,800,000 | 2,800,000 | 22,400,000 | - |



| 113 | 32,000,000 | 3,200,000 | 3,200,000 | 25,600,000 | - |
|-----|------------|-----------|-----------|------------|---|
| 134 | 33,000,000 | 3,300,000 | 3,300,000 | 26,400,000 | - |
| 143 | 35,000,000 | 3,500,000 | 3,500,000 | 28,000,000 | - |
| 161 | 39,000,000 | 3,900,000 | 3,900,000 | 31,200,000 | - |
| 84T | 23,000,000 | 2,300,000 | 2,300,000 | 18,400,000 | - |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금융기관 계좌번호 | |
|---------------------|----------------|------------------|--------------|
|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계좌 | 국민은행 | 581201-01-416258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 발코니 확장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수 건 근 영 |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 인식무지구증단단극(干) |

- ※ 상기 공사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홍보관에서 이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 부적격으로 판명 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 행에서 본인이 납부 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관련 유의사항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건축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 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ㆍ각 세대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 임.(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샤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실외기실은 제외) 설치부위와 재질은 타입별, 발코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



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됨),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샤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기본형)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ㆍ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가 기본형(발코니 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외부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외부창호의 사이즈, 개소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 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추가 선택품목

1) 추가 선택품목 옵션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 | J BL | | | | | (=11 - = / | 1 - 1 - 1 - 1 - 1 - 1 - 1 |
|----|-----------|-------------------------------------|---|--------------------------|----------------------|----------------------|--------------------------|---------------------------|
| _ | 대성 | | | | | 납부금액 및 일정 | | |
| | 택형 타입) | 구분 | 내용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I H) | | | | 계약시 | 2023.01.31 | 입주지정기간 | |
| | | 현관중문 | 3연동 자동문 | 1,860,000 | 186,000 | 186,000 | 1,488,000 | |
| | | 포셀린타일 | 거실, 주방, 복도 바닥 유럽산포셀린 타일 | 1,380,000 | 138,000 | 138,000 | 1,104,000 | |
| | | (주방 Style Up 선택시) | 기교, 구성, 국포 미국 ㅠᆸ근포글한 미글 | (1,530,000) | (153,000) | (153,000) | (1,224,000) | |
| 8 | 84A | 주방 Style Up |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랩, 독립형후드,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홈바(팬트리 위치이동), 아일랜드벽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외산수저서랍함, 주방TV(13.3") | 10,240,000 | 1,024,000 | 1,024,000 | 8,192,000 | |
| | | 마감+조명 Style UP (주방 Style UP 선택시) | 거실후면+복도아트월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픽처레일, 리니어조명(거실후면+복도아트월) / 현관, 주방, 거실, 복도 시트판넬, / | 3,700,000 (3,540,000) | 370,000 (354,000) | 370,000 (354,000) | 2,960,000 (2,832,000) | |

| |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 | | | | | |
|-----|-----------------------------|--|--------------------------|----------------------|----------------------|--------------------------|--|--|
| | 가구 패키지 (주방 Style Up 선택시) | 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 침실3 붙박이장 | 4,050,000 (3,860,000) | 405,000 (386,000) | 405,000 (386,000) | 3,240,000 (3,088,000) | | |
| | 현관중문 | 3연동 자동문 | 1,860,000 | 186,000 | 186,000 | 1,488,000 | | |
| | 포셀린타일 | 거실, 주방, 복도 바닥 유럽산포셀린 타일 | 1,410,000 | 141,000 | 141,000 | 1,128,000 | | |
| 84B | 주방 Style Up |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랩, 독립형후드, 루버판넬천장, 무선충전콘센트, 복도 장식장, 외산수저서랍함, 주방TV(13.3") | 9,570,000 | 957,000 | 957,000 | 7,656,000 | | |
| | 마감+조명 Style UP | 거실후면+복도아트월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픽처레일, 리니어조명(복도아트월) / 현관, 주방, 거실, 복도 시트판넬, /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
| | 가구 패키지 | 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 침실3 붙박이장 | 3,980,000 | 398,000 | 398,000 | 3,184,000 | | |
| | 현관중문 | 3연동 자동문 | 1,860,000 | 186,000 | 186,000 | 1,488,000 | | |
| | 포셀린타일 | 거실, 주방, 복도 바닥 유럽산포셀린 타일 | 1,410,000 | 141,000 | 141,000 | 1,128,000 | | |
| 84C | 주방 Style Up |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랩, 독립형후드, 루버판넬천장, 무선충전콘센트, 홈바 (아일랜드 미설치), 외산수저서랍함, 주방TV(13.3") | 8,540,000 | 854,000 | 854,000 | 6,832,000 | | |
| 04C | 마감+조명 Style UP | 거실후면+복도아트월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픽처레일, 리니어조명(거실후면+복도아트월) / 현관, 주방, 거실, 복도 시트판넬, /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3,880,000 | 388,000 | 388,000 | 3,104,000 | | |
| | 가구 패키지 | 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 침실3 붙박이장 | 3,360,000 | 336,000 | 336,000 | 2,688,000 | | |
| | 현관중문 | 3연동 자동문 | 1,860,000 | 186,000 | 186,000 | 1,488,000 | | |
| | 포셀린타일 | 거실, 주방, 복도 바닥 유럽산포셀린 타일 | 1,470,000 | 147,000 | 147,000 | 1,176,000 | | |
| | 주방 Style Up |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랩, 루버판넬천장, 무선충전콘센트 , 복도장식장, 외산수저서랍함, 주방TV(13.3") | 7,520,000 | 752,000 | 752,000 | 6,016,000 | | |
| 84T | 마감+조명 Style UP | 복도아트월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픽처레일, 리니어조명(복도아트월) / 현관, 주방, 거실, 복도 시트판넬, /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3,250,000 | 325,000 | 325,000 | 2,600,000 | | |
| | 가구 패키지 | 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팬트리 벽체 및 슬라이딩 도어 설치) / 침실2 붙박이장 | 6,430,000 | 643,000 | 643,000 | 5,144,000 | | |
| | 현관중문 | 3연동 자동문 | 1,860,000 | 186,000 | 186,000 | 1,488,000 | | |
| | 포셀린타일 | 거실, 주방, 복도 바닥 유럽산포셀린 타일 | 1,710,000 | 171,000 | 171,000 | 1,368,000 | | |
| 105 | 주방 Style Up |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랩, 독립형후드,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장식장, 외산수저서랍함, 주방TV(13.3") | 9,770,000 | 977,000 | 977,000 | 7,816,000 | | |
| | 마감+조명 Style UP | 거실후면+복도아트월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픽처레일, 리니어조명(거실후면+복도아트월) / 현관, 주방, 거실, 복도 시트판넬, /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3,830,000 | 383,000 | 383,000 | 3,064,000 | | |

| 변원등문 생물이 가능은 1,488,000 186,000 186,000 1,488,000 1,489, | | 가구 패키지 | 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 침실3 붙박이장 | 3,230,000 | 323,000 | 323,000 | 2,584,000 | |
|---|-----|-------------------|---|-------------|-----------|-----------|-------------|--|
| (주방 Style Up 선택시) | | | , | | | | | |
| (주방 Style Up 선택시) | | 포셀린타일 | | | | | | |
| 유명선자: 전점 전 등에 수 등이 전등시 등에 두집 집합으로, 유명성장: 건강조막 부타반별 무선장건 전투스 등에 14,79,000 1,479,000 1, | 113 | | 거실, 수방, 목도 바닥 유럽산포젤린 타일 | | | | | |
| 마감수로병 Style UP (주방 Style UP 선택시) 연관 구성 문도 나는 만날 /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243,000) (243,000) (243,000) (467 | | , |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현관포켓유리도어, 팬트리, 홈바, 현관창고, 복도&주방 장식장 ,디럭스 다이닝, 외산수저서랍함, 주방TV(13.3") | 14,790,000 | | | | |
| (주방 Style Up 선택시) (청고. 팬트리) (4670,000) (467,000) (467,000) (3,736,000) 현관증문 3면등 자동문 1,860,000 186,000 186,000 1,488,000 2,008,000 유럽산하드웨이나상부장 전동식 플랜, 우울천장+간집점등부 위판법 및 무신충전관센트 음박, 아일랜드박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외산수저서랍학, 주방TV(13.37) 1,036,000 1,036,000 1,036,000 8,288,000 주방 Style Up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외산수저서랍학, 주방TV(13.37) 1,036,000 1,036,000 1,036,000 1,036,000 8,288,000 주방 Style UP 연관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외산수저서랍학, 주방TV(13.37) 1,036,000 1,036,000 1,036,000 1,036,000 8,288,000 주변장(기실후면+복도이트월) / 전관, 주방, 거실, 복도, 가족실 시트판넬, / 기실후면+복도이트월 기 / 기실후면+복도이트월 기 / 기실후면+복도이트월 기 / 기실후면수물차장 간접조환 기업조환 기수를 자동문 3년은 대형 포셀린타일 (기실후면수물차장 간접조환 기수를 가수를 가수를 가수를 가수를 가수를 가수를 가수를 가수를 가수를 가 | | (주방 Style UP 선택시) | 리니어조명(거실후면+복도아트월) / 현관, 주방, 거실, 복도 시트판넬, /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 | | | |
| 변관중문 3연동 자동단 1,860,000 186,000 186,000 1,488,000 | | 가구 패키지 |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 침실3 붙박이장 | 3,040,000 | 304,000 | 304,000 | 2,432,000 | |
| 표설인타일 거실, 주방, 복도, 가족실 바닥 유립산포설인 타일 2,510,000 251,000 2,008,000 유립산하드웨어+상부장 전통식 플램, 우울천장+간접조명+타반별, 무선충전콘센트, 홈바, 아일랜드벽,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외산수저서랍함, 주방, 아일랜드부목도아트월 유립산 대형 포셀린타일, 의산수저서합함, 주방, 가(13.3) 기상후면+복도아트월 유립산 대형 포셀린타일, 의치계일, 기(16.000 기(16. | | (주방 Style Up 선택시) | (창고, 팬트리) | (4,670,000) | (467,000) | (467,000) | (3,736,000) | |
| 표실 전 등 한 Style Up 유럽산 기술을 바닥 유럽산포설린 타일 2,510,000 251,000 2,008,000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통식 플랩 7,036,000 1,036,000 1,036,000 1,036,000 1,036,000 8,288,000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통식 플랩 10,360,000 1,036,000 1,036,000 1,036,000 8,288,000 주방 Style Up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의사 기술은 | | | | 1,860,000 | 186,000 | 186,000 | 1,488,000 | |
| 유럽산하드웨어+상부당 전통식 플램. 우림전상=건접조명+루비판별, 무선충전콘센트 홈비, 아일랜드벽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의산수저서합함, 주방TV(3.3') 마감+조명 Style UP 기실후면+복도아트월 기업조명 기업조명 기업조명 기업조명 기업조명 기업조명 기업조명 기업조명 | | | | | | | | |
| 마감+조명 Style UP | 13/ | |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랩,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홈바, 아일랜드벽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외산수저서랍함, 주방TV(13.3") | | | | | |
| 전관중문 3면동 자동문 1,860,000 186,000 166,000 1,488,000 | 134 | 마감+조명 Style UP | 리니어조명(거실후면+복도아트월) / 현관, 주방, 거실, 복도, 가족실 시트판넬, / | 7,160,000 | 716,000 | 716,000 | 5,728,000 | |
| 143 포셀린타일 거실, 주방, 복도, 가족실 바닥 유럽산포셀린 타일 2,760,000 276,000 2,208,000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램,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관센트 홈바, 복도장식장, 아일랜드벽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외산수저서답함, 주방TV(13.3") 12,020,000 1,202,000 9,616,000 마감+조명 Style UP 거실후면+복도아트월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픽처레일, 리니어조명(거실후면+복도아트월) / 현관, 주방, 거실, 복도, 가족실 시트판넬, /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7,080,000 708,000 708,000 5,664,000 가구 패키지 창고, 팬트리(2개소), 드레스룸(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시스테선반 / 침실1 화장대, 불박이장(침실3, 4 사이) 8,860,000 886,000 886,000 7,088,000 포셀린타일 거실, 주방, 보조주방, 복도, 바닥 유럽산포셀린 타일 2,940,000 294,000 294,000 2,352,000 주방 Style Up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램,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주방장식장, 복도장식장, 주방TV(13.3") 12,660,000 1,266,000 10,128,000 | | | 시스템선반 / 침실1 화장대, 붙박이장(침실3, 4 사이) | 8,510,000 | 851,000 | 851,000 | 6,808,000 | |
|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램,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홈바, 복도장식장, 아일랜드벽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기보수저서랍함, 주방TV(13.3") 마감+조명 Style UP 기실후면+복도아트월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기사용자(기실후면+복도아트월) / 한관, 주방, 거실후모 보도아트월) / 한관, 주방, 거실우모천장 간접조명 가구 패키지 창고, 팬트리(2개소), 드레스룸(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시스템선반 / 침실1 화장대, 불박이장(침실3, 4 사이) 원관중문 3연동 자동문 1,860,000 186,000 1,488,000 보생인타일 거실, 주방, 보조주방, 복도, 바닥 유럽산포셀린 타일 2,940,000 294,000 2,352,000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램,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주방장식장, 복도장식장, 주방TV(13.3") | | | | | | | | |
| 유방 Style Up 유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홈바, 복도장식장, 아일랜드벽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외산수저서랍함, 주방TV(13.3") 마감+조명 Style UP 기실후면+복도아트월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픽처레일, 리니어조명(거실후면+복도아트월) / 현관, 주방, 거실, 복도, 가족실 시트판넬, /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가구 패키지 창고, 팬트리(2개소), 드레스룸(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시스템선반 / 침실1 화장대, 불박이장(침실3, 4 사이) 현관중문 3연동 자동문 1,860,000 186,000 1,488,000 포셀린타일 거실, 주방, 보조주방, 복도, 바닥 유럽산포셀린 타일 2,940,000 294,000 294,000 2,352,000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랩,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주방장식장, 복도장식장, 주방TV(13.3") | | 포셀린타일 | | 2,760,000 | 276,000 | 276,000 | 2,208,000 | |
| 마감+조명 Style UP | 142 | 주방 Style Up |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홈바, 복도장식장, 아일랜드벽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 12,020,000 | 1,202,000 | 1,202,000 | 9,616,000 | |
| 161 기구 배기지 시스템선반 / 침실1 화장대, 붙박이장(침실3, 4 사이) 8,860,000 886,000 7,088,000 7,0 | 145 | 마감+조명 Style UP | 리니어조명(거실후면+복도아트월) / 현관, 주방, 거실, 복도, 가족실 시트판넬, / | 7,080,000 | 708,000 | 708,000 | 5,664,000 | |
| 포셀린타일 거실, 주방, 보조주방, 복도, 바닥 유럽산포셀린 타일 2,940,000 294,000 294,000 2,352,000 161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랩,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주방장식장, 복도장식장, 주방TV(13.3") 12,660,000 1,266,000 1,266,000 10,128,000 | | 가구 패키지 | | 8,860,000 | 886,000 | 886,000 | 7,088,000 | |
| 포셀린타일 거실, 주방, 보조주방, 복도, 바닥 유럽산포셀린 타일 2,940,000 294,000 294,000 2,352,000 161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랩,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주방장식장, 복도장식장, 주방TV(13.3") 12,660,000 1,266,000 1,266,000 10,128,000 | | 현관중문 | 3연동 자동문 | 1,860,000 | 186,000 | 186,000 | 1,488,000 | |
| 161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랩, 주방 Style Up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12,660,000 1,266,000 1,266,000 10,128,000 주방장식장, 복도장식장, 주방TV(13.3") | | | | | | | | |
| 마감+조명 Style UP 거실후면+복도아트월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픽처레일, 7,030,000 703,000 703,000 5,624,000 | 161 | | 유럽산하드웨어+상부장 전동식 플랩, 우물천장+간접조명+루버판넬, 무선충전콘센트 | | | | | |
| | | 마감+조명 Style UP | 거실후면+복도아트월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픽처레일, | 7,030,000 | 703,000 | 703,000 | 5,624,000 | |



| | 리니어조명(거실후면+복도아트월) / 현관, 주방, 거실, 복도, 시트판넬, /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 | | | |
|--------|---|-----------|---------|---------|-----------|--|
| 가구 패키지 | 창고, 팬트리(2개소), 드레스룸(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시스템선반 / 붙박이장(침실3, 4 사이) | 6,620,000 | 662,000 | 662,000 | 5,296,000 | |

- ※ 포세린타일 바닥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포세린타일 바닥 시공은 거실+주방+복도이며(134, 143 타입은 거실+주방+복도+가족실), 미선택 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113타입의 경우 주방 Style Up 옵션 선택 시 침실4가 팬트리, 홈바, 현관창고 등으로 시공됩니다.
- ※ 84T, 134, 143, 161 타입의 주방에는 독립형후드가 기본 설치 됩니다.

2) 추가 선택품목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추가 선택품목 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 ᄉᅒᄋᅒ | 1010-2239-3097 | TLOIOILA 이비디(조) |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 추가 선택품목 옵션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수협은행 |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 자이에스앤디(주) | [예 :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 홍길동] |

-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계좌, 발코니 납부계좌, 가전 옵션품목(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시스클라인)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표)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 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전 옵션

1)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타입) | 선택안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비고 |
|----------------|-----|-----------------------------------|-----------|-----------------|
| 9.4 A /D /C | 2대 | 거실, 침실1 | 3,480,000 | |
| 84A/B/C 84T | 3대 | 거실, 침실1, 침실 1개소 선택 | 4,720,000 | |
| 041 |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6,230,000 | |
|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4,700,000 | |
| 105 | 4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 1개소 선택 | 5,760,000 | |
| | 5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7,270,000 | |
| | 4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6,320,000 | |
| | 5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 1개소 선택 | 7,390,000 | |
| 113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8,710,000 | |
| | 4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6,320,000 | 주방Style Up 선택시 |
| | 5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7,390,000 | Testyle ob Tavi |
| | 4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6,350,000 | |
| 161 | 5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 1개소 선택 | 7,670,000 | |
|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8,730,000 | |
| | 4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6,340,000 | |
| 134 | 5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또는 침실4 | 7,410,000 | |
| 134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또는 가족실 | 8,730,000 | |
| | 7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가족실 | 9,800,000 | |
| | 4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6,350,000 | |
| | 5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또는 침실4 | 7,410,000 | |
| 143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8,730,000 | |
|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가족실 | 8,830,000 | |
| | 7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가족실 | 9,900,000 | |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및 안방용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은 제외됩니다.



2)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로 타입 선택안 | |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 | 공급금액 | 공급업체 | 비고 |
|-------|--------------|-----|-------------|------------------------------------|-----------|-------------|----|
| | 18 | | | · · | | 0 8 8 11 | 1- |
| | | 선택1 | 2대 | 거실, 주방 | 1,840,000 | | |
| | 84A,84B,84C, | 선택2 | 2대 | 거실, 침실1 | 1,700,000 | | |
| | 84T,105 | 선택3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2,620,000 | | |
| | | 선택4 | 5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4,180,000 | | |
| | 134,143 | 선택1 | 2대 | 거실, 주방 | 1,840,000 | | |
| | | 선택2 | 2대 | 거실, 침실1 | 1,700,000 | | |
| 니스크리이 | | 선택3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2,620,000 | TLOIGHAGHEI | |
| 시스클라인 | | 선택4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4,960,000 | 자이에스앤디 | |
| | | 선택5 | 7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가족실 | 5,740,000 | | |
| | | 선택1 | 2대 | 거실, 주방 | 1,840,000 | | |
| | 112161 | 선택2 | 2대 | 거실, 침실1 | 1,700,000 | | |
| | 113,161 | 선택3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2,620,000 | | |
| | | 선택4 | 6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4,960,000 | | |

- ※ 주방 공간옵션이 적용되는 주택형의 알파룸에는 시스클라인 설치를 제외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공간의 시스클라인 선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쿨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클라인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대피공간(전열교환기 설치)과 면한 침실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시스템에어컨이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냉장고장 그린월

| 품목 | 선택안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비고 |
|----------|-----|---------------|-----------|----|
| 냉장고장 그린월 | 선택1 | 그린월 | 850,000 | |
| 하당보장 그년필 | 선택2 | 그린월+빌트인 김치냉장고 | 2,300,000 | |

- ※ 냉장고장 내 그린월, 빌트인 김치냉장고 및 가구의 배치는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그린월 구성품은 그린월, 식물포트이며, 식물포트는 입주후 별도방문하여 제공합니다.
- ※ 제공되는 식물은 생물의 특성상 길이나 모양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 기본제공되는 식물 구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빌트인 가전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제조사 | 모델명 | 공급금액 | 비고 |
|-------------------------|----------|-------------------|-----------|-------------|
| 빌트인 음식물처리기 파이널키친 | 자이에스앤디 | FK01 | 920,000 | |
| 빌트인 냉장고 | | S711SI24B | 5,750,000 | 홈바형 |
| 로드한 증정포 | LG전자 | S691SI34BS2 | 7,650,000 | 디스펜서형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수납특화 | | K221PR14B | 2,700,000 | |
| 식기세척기 | LG전자 | DUB22SB2 | 1,100,000 | |
| 광파오븐 | LG전자 | MZ385EBTAD | 540,000 | 하부 워밍드로워 포함 |
| 인덕션 | LG전자 | BEI3GTBI | 1,000,000 | |
| 비데일체형 양변기 | 아메리칸스탠다드 | C831700E/C365000B | 650,000 | |

-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빌트인 음식물처리기 파이널키친은 미생물분해방식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로 개인별 사용환경에 따라 관리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비데일체형 양변기는 1개소 당 설치금액이며, 기본으로 제공되는 양변기의 가격을 차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 광파오븐, 파이널키친,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시 여닫이 하부장으로 설치됩니다.
- ※ 인덕션 미선택시 3구하이브리드 전기쿡탑이 제공됩니다.
- ※ 빌트인 김치냉장고 또는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수납특화 미선택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공간만 제공됩니다.

5) 가전 옵션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가전 옵션 품목 납부계좌 | 신한은행 |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 자이에스앤디(주) |

- ※ 상기 계좌는 가전 옵션품목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계좌, 추가 선택품목 옵션(현관중문, 포세린바닥타일 등)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가전 옵션(시스템에어컨,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빌트인 가전) 공사비 납부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가전 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정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시공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 가능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 품목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는 시공사에 귀속됩니다.(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 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텐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와 형태가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 되는 경우 옵션계약도 함께 해제 또는 취소됨.(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시공사에 귀속됨.)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형태, 사이즈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가전,가구 및 마감)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청약자 및 계약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 구분 | 내용 |
|----|------|---|
| 공통 | 일반사항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이전 배포된 각종 홍보물 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하셔야 하며, 계약이후 단지 주변현황(인접APT 및 주변개발계획, 주택단지, 주변상가, 공공청사, 종교시설, 학교, 공원, 정류장, 단지외부도로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 |

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ㆍ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은 각각의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또한,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의거하여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지분의 감소는 별도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ㆍ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을 일부 침해당할 수 있으며, 배치도 상 층수 혼선이 있을 경우 동·호수 배 치가 우선함, 계약자는 동·호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타사 또는 타 단지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동 입면 계획상 설치된 장식물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음영 발생 등 일조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재료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필히 세대입면을 확인하기 바랍니다.(입면 재료에 따라 창호 상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 단지 내 옥외 조경공간은 모든 입주민을 위한 공동사용 공간입니다.
- · 옥외경관조명,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ㆍ본 아파트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라 발생 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엔지니어드스톤 등) 및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VII-0.202a입니다.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충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계획에 따라 건물 상호 간섭, 지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ㆍ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이에 따른 부담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확장을 고려한 평면설계로 견본주택과 설계도, 세대별 유니트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 | | 합니다. |
|--|---------------|---|
| | |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 중 인접 동 및 인접 단지에 의한 시각적 간섭 발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 야 합니다. |
| | | 아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 |
| | | |
| | | ·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지하주차장 램프 인접 주동은 하부에 위치한 세대 내에서 램프 지붕이 보일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램프 이용에 따른 소음,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지붕 재료 및 형태/구조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 |
| | | 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 |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
| | |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 (DA 등의) 설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 |
| | | 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 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 | |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 | | |
| | | · 각종 홍보물은 2022년 08월 사업계획인가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 | |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마감재 품목 등은 편집과정 상 오타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광장, 공원, 녹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국가정책 및 |
| | | 기 · 영도들에 표시된 무단 개발계속 및 기상 시발(도로, 학교, 시고, 상상, 상원, 기시 상)도상계속은 기 시상무세기 계속 모든 예상 상단 시상을 표현한 첫으로 시상무세, 기기상각 및 기 - 인허가 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당 사업장은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되는 아파트입니다 |
| | 인·허가 |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뿜칠,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형태에 따라 석재와 뿜칠,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 |
| | 한역기 | 습니다. |
| |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
| | |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 | · 인·허가 관청에서 본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 | | - ¬¬¬. · 단지 내에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단지내 보도)는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시설로 향후 임의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행을 차단할 수 없으며, 시설관리 및 |
| | |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고 본 사항에 대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인·허가 관청에 공증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본 아파트 인근에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예정으로 이에 따라 소음 및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선형,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본 아파트 내 및 한근의 전날, 확성 모모는 한어가 구전달성 및 전세기된 업의 달피 등에 따다 모모 전성, 개발 시기 등에 한성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단지 내·외부 여건 | · 단지 내 용벽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 가능합니다. |
| | | · 당해 지구 및 인근 사업지구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유무,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현 |
| | | 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당 사업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및 시설물은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적합하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
| | | ㆍ당 사업지 주변 토지에 개발계획은 당 사업자와 무관하며, 개별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의 진행 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 | • | • |

| | | ·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
| |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 | | · 본 사업지는 북측이 높고 남측이 낮은 북고 남저의 지형으로 단지 전체에 일사량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단지 남서측에는 50m도로(천마산터널 및 남항대교), 남동측에는 35m도로(충무대로), 서측 및 북측에는 8m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 |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단지 서측 및 북측에 8m의 도로의 경사에 따라 조경석, 옹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
| | 사업지 및 도로 | 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단지 주변 현황 |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 | |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 |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 | | · 단지 주변의 도로 및 소공원, 주민제공시설(1동 지하4층)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주민제공시설(1동 지하4층)은 인근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본 사업의 위탁자가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기부하는 시설입니다. |
| | 학교 | 본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본 아파트 인근 천마초등학교 배정이 가능하고, 중학교의 경우 송도중, 경남중, 부산여중, 부산중앙여중에 선배정 될 예정이나 배정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1동 지하5층 및 지하4층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발전기용 급배기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위치함으로 소음, 냄새, 먼지등의 사생활에 피하개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후면에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및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빛공해 등 사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113타입 세대 저층부 인근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계단 및 승강기가 설치가 되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 하 |
| 단지 | 동별현황 | 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후면에 위치한 스쿨버스존(보호자대기소)이 계획되어 있어 101동 및 102동 저층세대는 소음 및 먼지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4호세대 지하4층에 차량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이동 및 주차장 시설물에 의한 소음, 진동 등 사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옥상에 B.I.설치를 위한 옥상구조물과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상층부 세대에 야간 빛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후면은 인접대지 레벨차로 인한 최대8m 옹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후면에 위치한 8m도로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빛공해 등 사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3동 전면에 104동 계단실 및 엘레베이터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테라스세대) 전면에 인접건물로 인해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등 침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해당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각 동 주변으로 비상차로 및 산책로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에서는 소음 및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동 주변에 기타 급배기용 D.A 및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한 탑라이트 등 외부시설은 단지배치도를 참조 바랍니다. 사업승인 및 분양 후 D.A 등의 기타 외부시설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조경 및 동출입구 등 각종 구조물에 의해 조망 및 채광에 불리한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북측에 위치한 주출입구에 문주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구조물에 인해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ㆍ101동 지하에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필로티 전,후면에는 제연휀룸의 급기 그릴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크기 및 형태는 용량 및 부하 산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충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의 대수 및 속도, 인승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전거 보관소 위치와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레이아웃 위치, 마감재료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충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거동의 동. 호수. 충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 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 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101동, 103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외관계획

-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101동 주변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 하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출입계단의 형태, 폭. 식재 구성 및 범위, 마감재, 공간 구성, 디자인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중앙광장에 인접한 주동의 저층세대에서는 소음 및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는 서측에 주출입구, 남서측에 부출입구가 설치되는 2개의 차량 출입구가 설치되고, 남동측 35m도로(충무대로) 인근 101동 지하 6층에 보행자 출입구가 설치되며, 이용에 불 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주출입구과 부출입구의 위치 및 진입레벨이 상이하며, 출입구의 진출입 방법도 상이하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옥외계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는 실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01동 인근에 주차장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위치하여 차량통행으로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부 레벨차에 의해 단차구간이 발생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용 사다리,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 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옥상 옹벽파라펫은 구조검토에 의하여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의 돌출 구조물 및 옥탑층 입면 장식벽은 PC, RC 또는 건식 구조로 시공되며, 입면 장식벽은 구조재 보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공동주택관리법」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 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 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ㆍ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용설비 시스템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296대(아파트 지하 287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9대 - 경차 및 장애인 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지하 4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주동 지하층 및 옥탑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주차장은 천장 배관 등 현장 여건 에 따라 높이가 다소 변동될수 있어. 일부구간에서는 소형 택배차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하3~4층 주차장은 소형택배차가 진입 불가하며, 주행 유효높이 약 2.3m로 계 주차장 획됩니다. 지하주차장 레벨계획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로 높이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은 천정배 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주차 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주차구획구간은 출입문으로 인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은 실 공사시 일부 주차면의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인근의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ㆍ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 |
|----------|--------|--|
| | | · 지하주차장은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과 동하부 PIT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1개소, 완속 5개소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 전면 35m 도로변 인근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며, 아파트 101동 후면 근린생활시설 전용주차(9대)를 사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400mm, 팬트하우스 세대는 2,500mm, 테라스하우스(84T) 세대는 2,600mm로 시공됩니다.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단위세대 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보일러실(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가스배관은 보일러 사용을 위해 다용도실에만 설치됩니다. 주방에 전기쿡탑(하이브리드 전기쿡탑) 적용으로 인해 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 세대 |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흠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유사시에는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하부 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84T타입 제외)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1층 세대 바닥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향시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충간소음 및 방범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비탁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시 아파트 외부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 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안방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일체형이중창(별도의 철재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 자에게 있습니다. · 유리난간이 적용된 외부창호를 통한 이삿짐 운반 시 유리난간의 파손우려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
| 외부공간 | 외부공간의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일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육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공간에 수전이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부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 통기배관 및 연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 통기배관 및 연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 불법 건축물 설치 시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외부공간 건축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등) 외에 입주자가 추가적인 시공(대급, 타일 등) 중 발생한 하자(하부층 누수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외부공간 산부의 허용하증,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 관리소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외부공간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부공간 타입 세대(648 1층, 847, 113 1층, 134, 143, 161)의 우수드레인 설치에 따라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공간 타입 세대(648 1층, 847, 113 1층, 134, 143, 161)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부공간 타입 세대(648 1층, 847, 113 1층, 134, 143, 161)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전하고 학생 대략 외부공간의 모양 및 형태, 면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전하고 및 충범에 따라 외부공간의 모양 및 형태, 면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전하고 및 충범에 따라 외부공간의 모양 및 형태, 면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4 상흥 외부공간에는 옥탑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공간 하부에 단열재가 설치됨에 따라 외부공간 레벨은 실내측 레벨보다 높게 시공됩니다. 외부공간 하부에 단열재가 설치됨에 따라 외부공간 레벨은 실내측 레벨보다 높게 시공됩니다. 외부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 통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구 및 마? | |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시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옵션)은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단열 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침실과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세린/도기질/세라믹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옵션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가구 하드웨어(힌지 및 레일 등)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 유상옵션 중복선택으로 인한 자재증감 비용변동은 없습니다.
- · 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현관디딤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텐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텐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방Stvle Up 적용시 아일랜드 측면에 엔지니어드스톤 으로 마감 됩니다.(84C 타입은 홈바 측면)
-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ㆍ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 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 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전기·기계·설비

- \cdot 1층 세대 하부에 각 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 다
- · 침실, 알파룸, 베타룸이 옵션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팬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 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 세대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탠드형 및 벽부형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거실, 안방)
- ·세대 내 음성인식 시스템(월패드)은 거리에 따라, 음성엔진 인식범위에 따라, 주변 소음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단지주변 도로 및 현황은 실제 현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전 필히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 미건립 84m²B, 84m²C, 84m²T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m²A 타입에 준하고, 미건립 105m², 134m², 143m², 161m², 타입은 113m²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사양, 갯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 건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 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4000K 적용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ㆍ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 제5항 및「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 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 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XI 기타 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건축감리 | 전기·소방·통신감리 |
|---------------------|----------------|--------------|
| 회사명 | ㈜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삼성유비스㈜ |
| 감리금액 1,079,632,920원 | | 220,000,000원 |
| 사업자등록번호 | 502-81-29273 | 440-86-00406 |

견본주택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 의무사항 |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 방습층 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지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 (라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가지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

■ 관리형 토지신탁

본 아파트는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성안디엠피, 시공사인 자이에스앤디(주) 및 지에스건설(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며, 이에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 성안디엠피가 부담합니다.」

2.「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성안디엠피와 시행수탁자 한국투자 부동산신탁(주) 간 기간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에 관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 리·의무는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성안디엠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3.「분양계약자는 시공사인 자이에스앤디(주) 및 지에스건설(주)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을 인지하고, 시공사 교체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분양계약자는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5.「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분양계약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분양계약자는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6.「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구분 시행위탁사 | | 시공사 | |
|--------|---|--------------------------------------|---------------------------------------|-------------------------------|
| 상호 | (주)성안디엠피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자이에스앤디(주) | 지에스건설(주) |
|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충부대로83번길 51, 상가동 2층 (암남동, 삼경맨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0층 (충무로3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청진동) |
| 법인등록번호 | 180111-1277250 | 110111-7125720 | 110111-1934557 | 110111-0002694 |

■ 분양보증

| 보증번호 | 보증금액(원) | 보증기간 |
|------------------------|-----------------|--|
| 제01282022-101-0010600호 | ₩97,788,18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 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 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주택분양보증약관」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주택분양보증약관」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 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2. 공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2.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
-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 기타 사항은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송도자이르네 디오션 홈페이지: http://sd-xirn.com 분양문의: 1533-2569
-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574번지
-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송도자이르네 디오션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 2022.08.26. (금요일) | |
|----------------------|---------------------|---|--|
| 특별공급 | | 2022.09.05. (월요일) | |
| 일반공급 | 1순위 (해당지역, 기타지역) | 2022.09.06. (화요일) ~ 2022.09.07. (수요일) | |
| | 2순위 | 2022.09.08. (목요일) | |
| 당첨자발표 | | 2022.09.19. (월요일) | |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 2022.09.20. (화요일) ~ 2022.09.26. (월요일) 7일간 | |
| 계약체결 | | 2022.09.30. (금요일) ~ 2022.10.02. (일요일) 3일간 | |
| 분양문의 1533-2569 | | 총 227세대 (특별공급 88세대 / 일반공급 139세대) [84A, 84B, 84C, 84T, 105, 113, 134, 143, 161] | |

